

해양수산부, 평택·당진항 항만배후단지 (2-3단계) 개발사업 첫 삽 뜬다

-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하여 2027년까지 항만배후단지 23만^m를 추가로 공급해 평택·당진항의 부가가치 향상 기대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'평택·당진항 2-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*' 착공식을 3월 25일(화)에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(부지조성) 22.9만^m / (총사업비) 689억 원/ (사업시행자) 경기평택항만공사

평택·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하여 2027년까지 평택·당진항 일원에 배후단지 22.9만^m(축구장 32개 규모)를 조성하는 사업이다. 평택·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·공공용시설 부지 14.2만^m,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·제조시설 부지 8.7만^m를 조성할 계획으로,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·임대하게 된다.

특히,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에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2024년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'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·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'을 반영하여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*, 공용·공공용지 사전 확보**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지난 3월 10일 체결한 바 있다.

*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취득단가의 115% 이내에서 분양가격 결정

**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·업무·편의시설용 토지의 40%는 공용·공공용으로 사용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"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.1만^m와 2-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.4만^m에 더해, 2-2단계 사업(재정사업)과 이번 2-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, 평택·당진항에는 총 407.2만^m(축구장 570개 규모)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"이라며, "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·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항만국	책임자	과 장	김인경 (044-200-5960)
	항만투자협력과	담당자	사무관	홍근순 (044-200-5969)

참고 1

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개요

□ 항만배후단지 정의(항만법 제2조 제10호)

- ◆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 친수시설을 집단적(集團的)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·판매시설·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, 항만 이용자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



□ 항만배후단지 지정(항만법 제44조 및 제48조)

- ◆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(5년)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
<제4차(‘23~’30)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>
- ◆ ‘30년까지 부산항 등 8개 항만에 3,126만㎡를 조성계획
(1종 2,864만㎡, 2종 262만㎡ 지정)
- * ‘24년말 기준(민간부문 463만, 14.8%)
 - 1,855만㎡ 조성 완료(94.3만)
 - 405만㎡ (조성중, 198.7만)
 - 866만㎡ (장래, 170만)



□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(항만법 제47조, 시행령 제50조)

- ◆ (공모 방식) 장관이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민간사업자 모집 방식
 - ① 평택·당진항(2-1단계) 1종(공모)
 - ② 인천신항(1-1단계2구역) 1종
 - ③ 부산신항 옹동(2단계) 1종
- ◆ (제안 방식) 민간이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(제3자 공모 후 사업자 선정)
 - ④ 평택·당진항(2-3단계) 1종
 - ⑤ 인천신항(1-1단계3구역, 1-2단계) 1종
 - ⑥ 인천남항(2단계) 2종

참고 2-1

평택·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현황

- ◆ **항만배후단지** : 분업화 추세에 따라 항만을 단순물류거점에서 조립·가공·제조가 가미된 복합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간으로써 1종과 2종으로 구분
- (1종) 화물의 조립·가공·제조시설 및 물류기업 입주
 - (2종) 업무·상업·주거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기능보강 시설 입주

□ 평택·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및 현황

- (지정목적) ①국제여객 편의시설 및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등의 관련 시설 도입, ②장래 항만배후단지 확장 등에 대비한 기업의 입주여건 강화, ③평택호 관광단지 등 배후도시 개발계획과 연계 등

구분	계	1단계('10)	2-1단계('25)	2-2단계('28)	2-3단계('30)
사업면적 (천㎡)	5,862	1,421	1,135	1,287	2,019
1종	물류·제조	1,008	653	785	87
	공공시설 (도로, 공원 등)	413	482	502	142
2종	1,790	-	-	-	1,790
사업시행자	-	경기도 등	(주)경기평택글로벌	정부	1종: GPPC 2종: 미정
사업비 (억원)	7,686 (재정 1,750, 민자 5,936)	868(민자) (경기도52%, 평택시13%, YGPA35%)	1,972(민자) (GS글로벌45%, GS건설 25%, WML10%, 원광건설 경기평택공사, 신화로직스, 쏘니브이퍼씨 각 5%)	1,750(재정)	1종: 689 (경기평택공사) 2종: 2,407 (민자)
시행방식	-	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	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	재정	1종: 민간개발 2종: 평택시↔민간 민간개발사(논의중)
진행상황	-	운영중 ('10.9.준공)	실시계획 승인('20.12), 착공('21.6) 준공예정('25.9)	-	1종: 공사착공('25.1) 2종:미정
사업비 보전	-	투자비 회수시 까지('25년 예상) 무상사용	총사업비 범위내 부지취득	-	총사업비 범위내 부지취득
사업기간	-	'06~'10	'21~'25	'25~'30	'24~'27(1종)

참고 2-2

평택·당진항 항만배후단지(2-3단계) 개발사업(착공)

□ 추진 배경

- 항만배후단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항만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사업 개요

- (위치/면적)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준설토 투기장 일원/229,093㎡
- (총사업비/공사기간) 689억 원/ '25. ~ '27.(착공일로부터 36개월)
- (사업방식) 항만법 제47조(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공모)
- (토지이용계획) 복합물류시설, 업무편의시설, 공공시설 등
- (사업제안자/출자자) 경기평택항만공사/경기평택항만공사 100%

□ 추진 내용 및 향후 일정

- 사업의향서 제출('18.8.30), 사업제안서 제출('20.10.30)
- 사업 타당성 검토('20.11.~'21.5, KMI)
- 제3자 제안공모 공고('21.5.~'21.8.) 및 평가, 협상대상자 지정('21.9.28)
- 실시협약 체결('21.12.22, 변경협약 '25.3.10), 실시계획 승인('24.5.16)
- 시설공사 착공('25.1.1) 및 준공('27.12.예정)

<사업위치 평면도>

